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19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1. 15.

판결 선고2015. 1. 29.

주 문

1.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110,243,916원 및 그 중 109,933,553원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14. 4.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43,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와 C 사이에 2013.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43,03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43,0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피고 A와 사이에 C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C을 피보증인, 피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이후 신용보증기한 및 신용보증원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1	2003. 11. 18.	2003. 11. 18. ~ 2013. 11. 15.	57,600,000원
2	2010. 3. 29.	2010. 3. 29. ~ 2014. 3. 27.	51,200,000원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 및 6,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2013. 12. 9. 농협은행에 C이 연체한 원리금 합계 109,933,5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72,590원, 원고가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은 237,773원이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C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C의 딸인 피고 B는 2013. 4. 12. 주식회사 종영건축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2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8.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C에 대하여 2014. 6. 23.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82069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

1) 주위적 청구 피고 B가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C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43,0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C이 무자력상태에서 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3,0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43,035,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43,0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중단 및 적법 여부를 본다.

먼저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채무자인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인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 그 소송절차 역시 중단된다.

나아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모두 중단되고, 채무자인 C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여야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제584조 제6항), 원고는 2015. 1. 15.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승계인을 C으로 할 의사가 없다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C도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고 있지도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권리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흠결을 보정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 흠결이 보정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10,243,916원(대위변제금 109,933,553원+미수위약금 72,590원+대지급금 237,7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9,933,5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9.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4. 4. 14.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조아람

판사박지원